

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(“당사”)는 2017년 2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완전 자회사인 쌍용해운(주)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 합병은 당사 입장에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, 발행주식총수 기준 100분의 20 이상의 주주의 서면반대가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합병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회사의 본점 사무소에 비치된 합병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에 따라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, 쌍용해운(주)와의 소규모합병과 관련하여 소규모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9일을 소규모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로 하고,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22일

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(저동2가)

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

대표집행임원 사장 황동철

명의개서 대리인

한국예탁결제원

사장 이병래